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
국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6일, 박홍근의원 등 4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2024.08.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2024.09.09.)

상정, 소위원회부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2026.07.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2026.07.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홍근의원)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는 파행적 대결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뿌리내리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음. 현행법상 명확한 국회법을 두지 않고 합의제 모델인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으로 원 구성을 완성하는 전통을 지켜온 것도 협의를 우선하는 의회주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현행 국회법의 미비에서 비롯되어 원 구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2년마다 반복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입법부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뒷전이 되는 등 국가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지대함. 따라서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치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함.

이를 위해 보다 획기적이고 본질적인 대안은 미국과 같이 총선 결과에 따라 과반의석을 확보한 원내 제1당이 승자독식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 역시 4년제로 전환하는 것임.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다수당 독식 방식으로 전환하면 임기 동안 원내 정당 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국회의원 4년 임기동안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며 다음 선거에서 이전 국회의 성

과에 대한 책임을 다수당이 지게 하는 효과가 분명해질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안정적 양당제의 오랜 전통을 가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국회는 원내 제1당 단독의 과반 의석 확보를 매 선거마다 예정하기 어려운 바, 다수당 독식 방식 전환은 국회 개혁의 중장기적 과제로 두고 다음과 같이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장 천준호)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제도 도입취지와 달리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처리 속도가 평균적인 의안 처리 속도보다 느리므로 심사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개정안과 같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단축하는 경우 속

고가 줄어들고 소수당이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